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 1. 19.(수)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 육 위 원 회수 석 전 문 위 원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임동현 의원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O 발의일자: 2022년 1월 10일

O 회부일자: 2022년 1월 11일

3. 제안이유

-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무상교육을 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학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어 외국 국적 유아의 교육적소외와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충청 북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유아의 인권보호와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외국 국적 유아의 취학 전 3년간의 유치원 유아학비를 국내 유아들과 차별 없이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 예비 학교" 및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를 교육부정책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O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 내용 신설 (안 제3조의2)
- (안 제 12조)
- O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를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용어 변경 (안 제13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한국 국적의 유아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지원을 외국 국적 유아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학생 교육지원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의 다문화 교육정책변화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예비학교'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으로,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를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변경하고자 발의되었음.
- 충북 도내 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한국 국적 유아와 동일하게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것은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0조 규정을 준수하는 것임.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5월 13일 제78회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건의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 시·도교육청별로 관련 조례 개정과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¹⁾ 우리나라 1991년 국제연합(UN)에 가입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비준함.

〈타 시・도 조례 및 유아학비 지원 현황 〉

시・도명	교육청 지원	지자체 지원	
 강원	2022년부터 지원 예정 (공립유 13만원, 사립유 33만원)	미지원	
경기	공립유 10만원, 사립유 28만원을	도치원의 지원은 없음. 다만, 안산・부천・시흥・군포는	
	지원하고 있음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지원 되고 있음.	
경북	2022년부터 지원 예정 (공립유 13만원, 사립유 33만원)	미지원	
전북	공립유 10만원, 사립유 28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미지원	
광주	공립유 10만원, 사립유 28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미지원	
서울	2022년부터 지원 예정 (공립유 13만원, 사립유 33만원)	미지원	
인천	2022년부터 지원 예정 (공립유 13만원, 사립유 33만원)	미지원	

※ 자료: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 제공(2021.12월 기준)

- 따라서, 충청북도 내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 국적 유아도 차별받지 않고 교육복지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은 교육환경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본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며, 그 취지와 필요성, 주요 개정내용에 있어서 타당 하다고 판단됨.
- O 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외국 국적 학생도 한국 국적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비를 지원하여 무상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외국 국적 유아의 경우 유아학비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교육비지원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궁극적으로는 정부차원에서의외국 국적 유아의 유아학비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지원방안 마련에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

○ 또한,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안 제3조의2 제3호에 규정한 취학 전 3년의 유치원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을 시행할 경우, 현재 충북 도내 유치원에는 157명의 외국국적 유아가 재원하고 있어 2022년도에만 유아학비 지원으로 연간 약 3억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조례 개정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이 추진될 수 있는 충청북도교육청의 후속 조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2. 충청북도 만3~5세 외국 국적 유아 유치원 재원 현황 및 소요액〉

구분	단가(원)	원아수(명)	지원개월수	소요액(원)	비고
공립유	150,000	126	12	226,800,000	
사립유	350,000	31	12	130,200,000	
합계		157		357,000,000	